# 민간기업 협력 장애예술 프로젝트 지원 공모 안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장애예술인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장애예술의 지명을 넓힐 수 있도록 <민간기업 협력 장애예술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기업의 기술지원 또는 재원후원과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결합하여 장애예술의 예술적 성장과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 프로젝트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과 상생적 파트너십이 가능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예술표현의 확장을 희망하는 예술가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간기업 협력 장애예술 프로젝트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8월 ~ 12월

○ 사업목표 : 민간기업의 기술 및 재원 후원을 통해 기업의 예술 후원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 예술인의 예술창작 및 구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예술과 기업의 지속적 협력을 유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개발

○ 공모주제 : 문화예술 전반에서 민간기업의 재원, 기술(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 (단체)의 예술적 성장 및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 프로젝트 지원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1,000만원 지원(총 5건 내외)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주최 및 주관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 신청자격

○ 민간기업의 기술 및 재원 후원 협력이 가능한 경기도 소재(거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단체

- 개인 : 경기도 거주 장애예술인

- 단체 : 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소속 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 지원신청서 내 신청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개인 : 1)주민등록초본 2)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체 : 1)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24. 07. 15.(월) ~ 08. 09.(금) 16시까지

○ 심 의 : 2024. 08. 12.(월) ~ 08. 23.(금)

- 행정검토, 서류, 인터뷰 심의

○ 결과발표 : 2024. 08. 26.(월)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모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기간	• <b>2024년 8월 ~ 11월까지</b> ※ 정산·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1월 30일까지		
신청자격	• 민간기업의 기술 및 재원 후원 협력이 가능한 경기도 소재(거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단체 - 개인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 단체 : 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소속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 단체 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①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이상인 단체 ②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이상인 단체(관객 등 수혜자 불포함)		
공모주제	· 문화예술 전반에서 민간기업의 재원, 기술(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단체) 의 예술적 성장 및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 프로젝트		
지원내용	· 공모주제에 관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실행 지원		
신청장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르 전체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원규모	· <u>최대 1000만원 지원</u> (총 5건 내외)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액 결정		
심의방침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3~5인 ·심의방식 - 행정심사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서류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순 선정하여 개별 공지 - 인터뷰심의 : 프로그램 발표 및 질의응답(개인 및 단체별 10분 이내)		
심의기준	항목	심의기준(내용)	배점
	적정성 및 타당성	<ul> <li>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li> <li>사업 취지 및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다.</li> </ul>	30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ul> <li>참여자 모집, 공간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li> <li>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li> </ul>	30
	사업 추진역량	<ul> <li>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li> <li>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li> <li>(관련 분야 충분한 지식 및 경험, 노하우 등)</li> </ul>	30
	기대효과	• 사회 배려 대상자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와 향유 확대에 기여한다.	10
	합 계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2024. 07. 15.(월) ~ 08. 09.(금) 16:00까지 - 방문 및 서면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구분	세부내용		
제출 서류	<ul> <li>·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li> <li>- 서식1. 지원신청서</li> <li>- 서식2. 사업계획서</li> <li>- 서식3. 개인/단체 확인증(신청자격 증빙자료)</li> <li>- 서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li> <li>- [선택] 신청자(단체) 활동자료(자유양식)</li> </ul>		
	· 제출방식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내려받아 1개의 한글파일(.hwp)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제출서류 파일명 :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명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음		
의무사항	· 프로젝트 운영 및 예산집행은 24년 11월 30일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 현장 방문이 필요할 시 협조하여야 함 · 홍보물 제작 시 주최·주관·후원·사업명 등 표기 · 추후 정산 및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		
신청 제외 대상	<ul> <li>・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li> <li>・경기도에 소재(거주)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li> <li>・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li> <li>・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li> <li>・종교기관, 친교 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li> <li>・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li> <li>・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li> <li>・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및 사업(중복지원 불가)</li> </ul>		
선정 제외 대상	<ul> <li>·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li>·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li> <li>·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li> <li>· 신청제외대상 기준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경우</li> <li>·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li> <li>※ 유사·중복의 개념 :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li> </ul>		
기타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상기 기술한 의무사항 및 지원방침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를 요청받을 수 있음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사업팀 / 031-231-0843 ※ 평일 10시~16시까지 문의 (점심시간 12~13시 제외)		